

From:

To:0625242876

21/12/2022 10:36

260 P.002/004

▶ 모두의리닝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한국어판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모두의 리닝'(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회사'가 위탁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 세부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범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선지원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첨부지원 환급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료교육 훈련
계약기간	2022.12.21 - 2022.12.31	훈련과정명	<u>English Pen</u>
훈련인원	5 명	훈련비용	자비부담금 · (전체준비비)
교육 담당자명 연락처,이메일	이호 - 6610-1748 dofkeli@naver.com	사업장관리번호 (고용관리번호 11자리)	409-90-37592
결제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이체	전자계산서(민세) 보통 이메일	dofkeli@naver.com
훈련비용 납부	<input type="checkbox"/> 1항 : '고객'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비부담금만 '회사'에 납부 <input type="checkbox"/> 2항 : '고객'이 교육비(자비부담금+정부지원금)를 '회사'에 납부하고, 교육 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제2조(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 훈련생들이 성실히 조건을 밟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무득이한 사유로 조건을 밟을 수 없을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수료) '회사'는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 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조(성실의무) 1.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 의거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어려운 부정진 방법으로 직원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 3. '고객'이 고용보험 및 관리자 등 권리가 있다. 4. '고객'은 소속 훈련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받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봉보의무) '고객'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퇴직, 전보 등) 발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

1.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친숙사업인증금으로부터 확급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 2.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1. 총 계약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을 전체 훈련비로 하여 '고객'은 훈련비용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위탁 계약을 실시된다. 2. 고객은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고용보험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3. 자비부담금은 교육 훈련 전 선지급(교육 개강일~7일전)되어야 하며, 교육 개강일 기준으로 훈련인원의 변동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훈련 실시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 될 수 있다. 교육 훈련 미수료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지 못한 훈련생은 교육 종료 후에도 교육 미수료로 인해 정부지원금 관급이 불기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비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 주는 기록에 남부한다. 5. 재수강을 실시 하였음에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의 정부지원금은 미입금 비용은 자비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6. 정부지원 인도조사, 부정수급 등으로 원금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7. 고용보험 및 관리자 등 권리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8. 훈련인원 확정 후 '자비부담금', 훈련 종료 후 '정부지원금'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한다.

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

1.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계약일로부터 해당 계약년도 말까지로 정한다. 2.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하며, 수령취소기간(개강 후 7일 이내) 이후 확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1. 총 계약금액은 훈련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신청한 교육비이며, 교육 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 2. 회사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로부터 7일 내에 원금으로 지급한다.

2022 년 12 월 21 일

(고객)

상호명 : 한국어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고객 본부 훈련대기 7층 2동

대표이사 이영경

(회사)

상호명 : 주식회사 모두의 리닝
사업자등록번호 : 272-81-01049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6동 621-625호(가산동, 기산 하우스디 외인감자원)

대표이사 이명진